

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(안)

의안 번호	10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시상이 산발적이며 회수빈번과 각양각색 명칭사용과,
- 무분별한 시상으로 도지사상의 훈격및 위상실추
- 그간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온 각종 대상제를 통합하여 「도민대상」을 제정하므로서 대상의 위상을 높이고 그 공적을 확산시키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현행 10종 59개상 → 1종 8개상(8개 부문)으로 통폐합

- 충청북도문화상 조례
-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 조례
-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
-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
- 기타 대상격 일반상훈 6종

를
폐지하여

<충청북도도민대상 1종 8개상>

- 학술부문 ○ 여성부문
- 문.예부문 ○ 청소년부문
- 지역발전부문 ○ 농어민부문
- 교육.체육부문 ○ 산업.근로부문

통폐합

□ 관계법령

- 충청북도문화상 조례
-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 조례
-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
-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

- 첨부 : 1.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(안)
2. 기타 참고자료 <관계법령(조례)>

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(안)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도민으로서 충청북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충청북도도민대상 (이하 "대상" 이라 한다)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수상대상자) ①대상수상대상자는 추천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(과거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추천공고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)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.

②한번 대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의 대상도 수상할 수 없다.

제 3조 (대상부문)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학술부문
2. 문.예부문
3. 지역발전부문
4. 교육.체육부문
5. 여성부문
6. 청소년부문
7. 농어민부문
8. 산업.근로부문

제 4조 (심사위원회 설치) 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5조 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도지사가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상 부문별로 각4인씩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 위원은 도의 부문별 관련부서 에서 배수추천된 전문인사중 도지사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 추천마감일후 10일 이내에 선정 위촉하며, 대상 시상 종료후 해촉 된것으로 본다.

③위원회에 위원장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제 6조 (회의및 의사) ①회의는 도지사,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②제1항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7조 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.

②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부문별 업무담당계장이 된다.

제 8조 (추천및 심사등) ①위원회는 각 부문별 대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원으로 심사부를 구성한다.

②수상대상자는 매년 9월말까지 시장.군수가 추천하되, 추천방법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9조 (수상자의 결정) 대상수상 대상자는 부문별 심사부의 예심과 위원회의 심의 의 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.

제10조 (시상)①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

②제1항의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.

제11조 (실비변상)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충청북도문화상조례(조례 제146호 1963.1.11), 충청북도장한 여성대상조례(조례 제1656호 1968.11.4),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(조례 제1716호 1989.6.2),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(조례 제1805호 1990.9.21)는 이를 폐지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충청북도문화상,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, 충청북도청소년대상,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 포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충청북도민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.